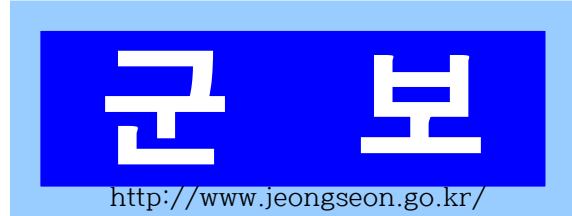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03호 2013. 10. 2.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013-2351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013-2352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8
- 정선군 조례 제2013-2353호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정선군 조례 제2013-2354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정선군 조례 제2013-2355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 20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3-78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2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3-661호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31
- 정선군 공고 제2013-680호 정선 아리랑 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안) 공람·공고 32
- 정선군 공고 제2013-681호 2013년도(FY2012) 정선군지방재정공시(수시)공고 34

조 례

제207회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013-2351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료 납부)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체육관에 대해서는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강당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일 7일전 취소: 전액반환
3. 사용일 3일전 취소: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15조(중전의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4조)제2항 중 “시설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16조”를 “제2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목적				
사용시설	주시설		부대시설	
사용기간	. . . : ~ . . . :		참가인원 (예정)	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행사계획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사용허가서

사용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용기간	. . . : ~ . . . :			
사용시설	주시설		부대시설	
사용목적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하오니 불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 면)

허가조건

- 청소년 관련 법 및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는 등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 드립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을 철회하려면 정선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 사용일 7일 전 철회 신청: 전액 반환
 - 사용일 3일 전 철회 신청: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파손·훼손·분실한 때에는 정선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현판 등을 설치하려면 정선군수 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복구하고, 정선군수 또는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소년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 정 이 유

- 정선군 청소년시설 내 체육관 및 강의실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며,
- 재위탁 시 신청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단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에 대한 규정(제9조~제11조)
- 시설물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한 규정(제12조~제13조)
- 위탁신청 시 신청서 제출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사를 “위원회”의 심사로 개정(제15조, 제19조)

제207회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013-2352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야영데크(4×4m)			노지 야영장			비 고
	성수기 (7~8월)	비 수 기		성수기 (7~8월)	비 수 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야영장	20,000	10,000	20,000	10,000	5,000	10,000	텐트1조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성수기는 7. 1부터 8. 31까지로 하며, 비수기는 9. 1부터 다음해 6. 30까지로 한다.
3. 비수기 주중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주말은 금, 토, 일, 공휴일로 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5. 전기사용은 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소형가전만 사용(총 합계 500W 미만) 가능하며,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개 정 이 유

-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야영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야영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설사용료의 조정 및 신설규정을 마련하고, 야영장비 임대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규정을 삭제함.
- 이와 관련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시설사용료 변경 및 신설이 필요함.

주 요 내 용

- 사회 통념상 순화되지 않은 명칭사용에 대한 규정 삭제(제7조제1항)
- 시설사용 요금표 “별표 1”을 개정함. (제3조 제1항 관련)

제207회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013-2353호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관광지 및 화암동굴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를 “정선군 지정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정선군 지정관광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암관광지는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약수길 1300 일원으로 한다.
2. 아우라지 관광지는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일원으로 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화암관광지의 관리운영”을 “지정관광지 관리운영”으로 한다.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화 암 동 굴			야 영 장		캠 핑 캐 라 반			모 노 레 일			카 트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노지사용료	데크사용료	3인용	4인용	6인용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1인승	2인승
일 반	개인	5,000	3,500	2,000	6,000	10,000	· 성수기 8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60,000 - 평일 50,000	· 성수기 9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65,000 - 평일 55,000	· 성수기 10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70,000 - 평일 60,000	3,000	2,000	1,500	12,000	17,000
	단체	4,500	3,000	1,500										
군 인	개인	3,500	2,500	1,000										
	단체	3,000	2,000	800										
투표자	개인	3,000	2,000	800										
	단체	2,500	1,500	500										

※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중복감면은 불가함.

※ 성수기: 7월~8월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별지 제1호서식】

화암동굴 관람권

(앞면)

관람권 ADMISSION TICKET 일련번호: 발행 행 내 역 발행일자: 합계금액:	본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동굴 전경사진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행일자: 발행 행 내 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	---	--

(뒷면)

금과 대자연의 만남! 환상의 금광테마동굴 화암동굴은 199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캐던 천포광산(泉浦鑛山)으로 당시 연간 순금 22,904g을 생산하는 국내 5위의 금광이었다. 이 동굴은 당시 굴진작업 중 발견한 천연동굴과 금을 캐던 폐 갱도를 추가 개발하여 공개한 테마동굴로서 금광개발에 따른 역사성과 2,800㎡의 자연동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굴의 총연장은 1,803m이다. 이 동굴은 역사의 장(16개 Zone), 금맥따라 365, 동화의 나라(11개 Zone) 금의세계(13개 Zone), 대자연의 신비(자연동굴)로 5개장 41개 Zon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연동굴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국내 최초의 테마동굴이다. 화암동굴은 강원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안내 및 문의>> •전화 : •홈페이지 :	
---	--

시설이용권(야영권)

(앞면)

야영권 ADMISSION TICKET 일련번호: 발행 행 내 역 발행일자: 합계금액:	본 야영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전경사진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행일자: 발행 행 내 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	--	--

(뒷면)

주변관광지 안내 ● 화암8경 - 제1경(화암약수), 제2경(거북바위), 제3경(용마소), 제4경(화암동굴), 제5경(화표주), 제6경(소금강), 제7경(물운대), 제8경(광대곡) ● 등산코스 - 화암약수 → 소금강 → 물운대 (3시간 소요) - 물운대 → 광대곡 (왕복 2시간) - 화암약수 → 불암사 → 구슬동 → 지역산 → 민동산 → 증산 (6시간 소요) - 화암약수 → 지역산 → 삼내약수(4시간 30분 소요) <<안내 및 문의>> •전화 : •홈페이지 :	
--	--

시설이용권(모노레일 승차권)

(앞면)

모노레일승차권 BOARDING TICKET 일련번호: 발행내역: 발행일자: 합계금액:	본 승차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동굴 관람은 별도 관람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절 취 선 모노레일카 전경사진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행일자: 발행내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	--	--

(뒷면)

정선 화암동굴의 신비로운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광장으로 이루어진 천연동굴이 함께하는 화암동굴에는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높이 28m의 황종유벽과 대석순, 대석주, 마치 빗어놓은 듯한 마리아상, 부처상, 장군석, 그리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석순, 석화, 곡석등 동굴 생성물들이 가득하여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석회석 동굴이며 또한, 금과 대자연, 동화속의 금개비, 은개비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내최초의 테마형 동굴로서 5개장과 41개 ZONE으로 구성된 1,803㎡관람구간을 통하여 새롭고 다채로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 •전 화: •홈페이지:	
---	--

시설이용권(캐라반 사용권 원부)

No 캐라반 사용권 원부 사 용 료: ₩ (금 원정) 사용시설: 사용기간: ~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주소: 성명: (인) 년 월 일 ○ ○ ○ ○	No 캐라반 사용권 원부 사 용 료: ₩ (금 원정) 사용시설: 사용기간: ~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주소: 성명: (인) 년 월 일 ○ ○ ○ ○	o 전면 캐라반 전경 및 관광질서 관련 표어 o 이면 시설현황 안내도 및 캠프장내 금지(유의)사항 등
--	--	---

시설이용권(카트 이용권)

(앞면)

카트 이용권 BOARDING TICKET 일련번호: 발행 내 역 발행일자: 합계금액:	본 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동굴 관람은 별도 관람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절 취 선 카트체험장 전경사진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발행일자: 발행 내 역 합계금액: 정선군 로고
--	---	---

(뒷면)

정선 화암동굴의 신비로운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광장으로 이루어진 천연동굴이 함께하는 화암동굴에는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높이 28m의 황종유벽과 대석순, 대석주, 마치 빗어놓은 듯한 마리아상, 부처상, 장군석, 그리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석순, 석화, 곡석등 동굴 생성물들이 가득하여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석회석 동굴이며 또한, 금과 대자연, 동화속의 금개비, 은개비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내최초의 테마형 동굴로서 5개장과 41개 ZONE으로 구성된 1,803㎡관람구간을 통하여 새롭고 다채로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 •전 화 : •홈페이지 :	
--	--

개 정 이 유

-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아우라지관광지 및 화암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을 변경
 - －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
- 정선군 지정관광지의 명칭 및 위치 신설 (제2조의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충조항 삭제 (제8조제1호)
-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금액 조정 (별표1)

제207회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013-2354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도시계획조례”를 “정선군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영 제55조제5항제5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1)”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3.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

4.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단순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③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 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7조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제2항 중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를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안에서”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 정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연접개발제한에 대한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대상 폐지<삭제>(제17조의2)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에 대한 상위법 조항 정비(제17조의3)
-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및 토지사기 분양 방지(제22조)
-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상적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행위 에 대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 <신설>(제25조의2)
-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제28조제2항)

제207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013-2355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 “동계올림픽”이라 한다)의 성공개최를 위한 동계올림픽 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활동, 참여열기 확산, 문화군민의식 고취 등에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정 이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군민의 참여열기 확산 및 문화군민의식 고취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등 규정(제1조~제3조)
- 지원사항 등 규정(제4조~제5조)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3-78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3-353호(2013. 09. 13)로 결정(변경)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27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지형적 특성으로 개발가능지가 부족한 지역의 현실에서 기존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와 고용확대 등에 따른 신규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금회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하여 신규 공동주택을 원활히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 153-5번지 일원

다. 면 적 : 81,088㎡

라. 사 업 시 행 자 : (주)다솔 대표이사 박창준

마.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 실음생략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정선군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20,676,359	-	1,220,676,359	100.00	
도 시 지 역	계		42,582,826	-	42,582,826	3.49	
	주거지역	소 계	5,145,387	-	5,145,387	0.4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257,461	감) 81,088	1,176,373	0.10	
		제2종일반주거지역	3,536,444	증) 81,088	3,617,532	0.30	
		제3종일반주거지역	80,713	-	80,713	0.01	
		준주거지역	270,769	-	270,769	0.02	
	상업 지역	소 계	1,125,861	-	1,125,861	0.09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109,006	-	1,109,006	0.09	
		근린상업지역	16,855	-	16,855	0.00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619,126	-	619,126	0.0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06,497	-	306,497	0.03	
		준공업지역	312,629	-	312,629	0.03	
	녹지 지역	소 계	35,692,452	-	35,692,452	2.92	
		보전녹지지역	3,348,109	-	3,348,109	0.27	
		생산녹지지역	905,580	-	905,580	0.07	
		자연녹지지역	31,438,763	-	31,438,763	2.58	
비 도 시 지 역	계		1,178,093,533	-	1,178,093,533	96.51	
	관리 지역	소 계	223,849,999	-	223,849,999	18.34	
		계획관리지역	101,009,184	-	101,009,184	8.27	
		생산관리지역	27,570,708	-	27,570,708	2.26	
		보전관리지역	95,270,107	-	95,270,107	7.80	
	농림지역		946,101,267	-	946,101,267	77.51	
	자연환경보전지역		8,142,267	-	8,142,267	0.67	

※ 기정면적은 강원도고시 제2013-279호(2013.07.12) 고시 면적임.

나) 고한·사북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422,820	-	99,422,820	100.00	
도 시 지 역	계		11,834,826	-	11,834,826	11.90
	주거 지역	소 계	1,572,509	-	1,572,509	1.58
		제1종전용주거 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39,389	감) 81,088	558,301	0.56
		제2종일반주거지역	835,177	증) 81,088	916,265	0.92
		제3종일반주거지역	69,913	-	69,913	0.07
		준주거지역	28,030	-	28,030	0.03
	상업 지역	소 계	390,618	-	390,618	0.39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90,618	-	390,618	0.39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31,179	-	31,179	0.03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31,179	-	31,179	0.03
	녹지 지역	소 계	9,840,520	-	9,840,520	9.90
		보전녹지지역	215,335	-	215,335	0.22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9,625,185	-	9,625,185	9.68
비 도 시 지 역	계		87,587,994	-	87,587,994	88.10
	관리 지역	소 계	23,067,528	-	23,067,528	23.20
		계획관리지역	15,389,878	-	15,389,878	15.48
		생산관리지역	728,549	-	728,549	0.73
		보전관리지역	6,949,101	-	6,949,101	6.99
	농림지역		62,160,466	-	62,160,466	62.52
	자연환경보전지역		2,360,000	-	2,360,000	2.38

다) 사북 동탄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1,088	-	81,088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1,088	감) 81,08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81,088	81,088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81,088	250%이하	• 당해지구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주택건설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종 상향을 추진하여, •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서민주택건설 사업 추진을 도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⑬	사북동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산 153-5번지 일원	81,088	-	81,088	강고 제2009-196호 (‘09.5.29.)	

3)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945 (258)	중2-2 사북리 72-5임	사업지구 북측 구역계	일반 도로		강고 제2009-196호 (‘09.5.29.)	

※ ()는 구역내 연장

나) 공간시설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1	공원	어린이공원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	1,540	1,540	강고 제2013-353호 (‘13.9.13.)	
신 설	12	공원	어린이공원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	1,715	1,715	강고 제2013-353호 (‘13.9.13.)	

■ 공원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1	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1,540m ²	• 공원조성으로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단지내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의 쾌적성 향상
12	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1,715m ²	• 공원조성으로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단지내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의 쾌적성 향상

② 녹지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	녹지	경관녹지	사북읍 사북리 산153-24번지	-	45	45	강고 제2013-353호 (‘13.9.13.)	
신 설	2	녹지	경관녹지	사북읍 사북리 산153-24번지	-	1,133	1,133	강고 제2013-353호 (‘13.9.13.)	

■ 녹지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녹지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45m ²	• 단지내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공간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녹지공간 확보
2	녹지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133m ²	• 단지내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공간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녹지공간 확보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기 정

도 면 번 호	가구번호	면적(m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²)	
합 계				81,088	
1	A1	77,221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일원	77,221	도로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 전체를 단일 가구 및 획지로 분할시행 (단, 획지분할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규모 이상으로 하며, 3개 획지 이하로 제한)
2	도로	3,867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일원	3,867	

■ 변 경

도 면 번 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합 계						
1	A	68,483	1	사북리 153-24번지	21,793	공동주택 1단지
			2	사북리 153-5번지	28,607	공동주택 2단지
			3	사북리 153-5번지	18,083	공동주택 3단지
2	B	4,323	1	사북리 153-24번지	290	근린상가
			2	사북리 153-24번지	368	"
			3	사북리 153-24번지	360	"
			4	사북리 153-24번지	351	"
			5	사북리 153-24번지일원	356	"
			6	사북리 153-5번지	332	"
			7	사북리 153-5번지	368	"
			8	사북리 153-5번지	368	"
			9	사북리 153-5번지	368	"
			10	사북리 153-5번지	368	"
			11	사북리 153-5번지	368	"
			12	사북리 153-5번지	426	"
3	C1	1,540	1	사북리 153-5번지	1,540	어린이공원
	C2	1,715	1	사북리 153-5번지	1,715	"

도 면 번 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4	D1	45	1	사북리 153-24번지	45	경관녹지
	D2	1,133	1	사북리 153-24번지	1,133	"
5	도로	3,849		사북리 153-5번지일원	3,849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기 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사북읍 사북리 산153-5 일원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항 (나)호 연립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항 제1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이하
		용 적 륜	• 55%이하
		높 이	- 공동주택 : 4층 이하 - 근린생활시설 : 2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주민에게 공간감을 형성 시킬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건축물은 획일적인 평형배치를 지양하고 단지내 균등한 일조권 보장을 권장
		형 태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
		색 채	- 공동주택 - 구조색 : 색상 7.5YR-5Y, 명도8-10, 채도1-2 - 보조색 : 색상 7.5YR-5Y, 명도6- 7, 채도4-6
		건 축 선	• 중로 2-10호선과 접한 지역은 도로경계선에서 5m 건축한계선 지정

■ 변 경

①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사북읍 사북리 산153-5 일원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아파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사북읍 사북리 산153-5 일원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13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주변의 시각통로 확보가 용이하고, 주민에게 공간감을 형성 시킬 수 있도록 배치 권장 - 건축물은 획일적인 평형배치를 지양하고 단지내 균등한 일조권 보장을 권장
		형 태	• 공동주택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절히 조화시킴.
		색 채	- 구조색 : 색상 7.5YR - 5Y, 명도8-10, 채도1-2 - 보조색 : 색상 7.5YR - 5Y, 명도6- 7, 채도4-6
		건 축 선	• 도로 및 구역경계부와 접하는 지역은 5m의 건축한계선 지정

②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사북읍 사북리 산153-5 일원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항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항 제2종근린생활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 방향과 일치되어야 한다. • 각각에 접한 대지의 벽면은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에 일치되어야 한다. • 다만, 건축선 준수 및 공개공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 태		•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 건축물의 외부형태는 사선절제형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개층 이하의 사선절제형 건축형태는 허용한다. •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건축물의 외부형태는 계단형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개층 이하의 계단형 건축형태는 허용한다. - 사선절제형과 계단형이 혼합된 건축형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부 가로변에 접한 전면부는 오픈할 수 있는 구조를 권장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사북읍 사북리 산153-5 일원	형 태		• 1층부에 한하여 차양막을 설치하도록 하되 가급적 상점간 형태 및 색채를 통일하고 돌출폭은 900mm 이내로 한다.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담, 문, 지하층 출입구 등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이때 담,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 측면부에 도시가스배관을 제외한 설비시설(배관, 덕트)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옥탑층의 미관저해시설(냉각탑, 물탱크, 실외기, 덕트 등)은 도로변에 면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옥탑층 미관저해시설 중 차폐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로(보도)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보도)와 10cm 이내로 조성하여야 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도로(보도)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색 채	• 반사유리 등 반사성 재료사용을 금한다. • 외벽면 전체를 페인트로 마감할 수 없다. • 원색계열의 마감재료 및 도료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건 축 선		• 도로와 접한 지역은 도로경계선에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교통계획	•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내로만 차량출입이 가능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원칙적으로 분리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동선 도로는 보행로를 포함하여 12m이상을 확보하고 보조동선 도로는 보행로를 포함하여 8m이상 확보				
기 타	• 단지경계부로 폭5m 조경녹지 확보 • 단일주체에 의한 일괄개발 방식만 허용 • 주택지와 자연환경과의 완충지대로 수고 3m이상 수목밀식 식재 및 주민산책로 활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광장 및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을 구역 내부에 적절하게 배치				
	구분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주민휴식시설 (연결녹지)
	개소	1	3	1	-
	면적(㎡)	1,600㎡ 이상	1,600㎡ 이상	2,900㎡ 이상	1,300㎡ 이상

■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교통계획	•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내로만 차량출입이 가능

구 분	계 획 내 용
교통계획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원칙적으로 분리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동선 도로는 보도를 포함하여 15m이상을 확보하고 보조동선 도로는 보도를 포함하여 12m이상 확보
기 타	• 단지경계부로 폭5m 조경녹지 확보 • 단일주체에 의한 개발만 허용 • 주택단지와 녹지와의 완충지대로 교·관목의 밀식 및 주민산책로, 펌프장부지로 활용 • 공동주택 단지내에 광장 및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을 적절하게 배치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3-661호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1.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6월 1일 기준

나. 개별주택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6-6호외 100호 주택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및 면적, 건물연면적, 구조 등 개별주택의 대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

라. 열람방법 :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r>)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함)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9월 30일 부터 10월 29일 까지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에 신청사유와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3-680호

정선 아리랑 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안) 공람·공고

강원도고시 제2013-235호(2013.06.14)로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수립된 정선 아리랑 문화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02일

정 선 군 수

1.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가. 공원 총괄표 : 변경없음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아리랑	문화공원	정선읍 애산리 560일원	40,810	-	40,810	2013.6.14. (강고제235호)	

다. 문화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 설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40,810	40,810	－	5,192.06	5,572.06	증 380.00	7,093.59	7,473.59	증 380.00	
조 경 시 설		226	226	－	27.34	27.34	－	27.34	27.34	－	
1-1	육 모 정	114	114	－	11.45	11.45	－	11.45	11.45	－	
1-2	초 정	112	112	－	15.89	15.89	－	15.89	15.89	－	
교 양 시 설		15,459	15,749	증 290	4,814.91	4,874.91	증 60.00	6,716.44	6,776.44	증 60.00	
2-1	공연전시장	11,074	11,074	－	4,300.68	4,300.68	－	6,202.21	6,202.21	－	
2-2	성 황 당	68	68	－	5.04	5.04	－	5.04	5.04	－	
2-3	저 립 집	519	519	－	43.56	43.56	－	43.56	43.56	－	
2-4	너와집 1	555	555	－	88.74	88.74	－	88.74	88.74	－	
2-5	방 아	704	704	－	37.86	37.86	－	37.86	37.86	－	
2-6	귀 틀 집	437	437	－	44.46	44.46	－	44.46	44.46	－	
2-7	돌 집	383	383	－	55.08	55.08	－	55.08	55.08	－	
2-8	농기구공방	146	146	－	25.92	25.92	－	25.92	25.92	－	
2-9	와 가	878	878	－	158.49	158.49	－	158.49	158.49	－	
2-10	굴피집 1	455	455	－	55.08	55.08	－	55.08	55.08	－	
2-11	놀이마당	240	240	－	－	－	－	－	－	－	
2-12	공 연 장	－	290	증 290	－	60.00	증 60.00	－	60.00	증 60.00	신 설

편 의 시 설		1,949	2,737	증 788	221.52	541.52	증320.00	221.52	541.52	증320.00	
3-1	주막초가집	631	631	-	50.04	50.04	-	50.04	50.04	-	
3-2	주막너와집	333	333	-	25.92	25.92	-	25.92	25.92	-	
3-3	주막굴피집	331	331	-	25.92	25.92	-	25.92	25.92	-	
3-4	화장실1	318	318	-	67.80	67.80	-	67.80	67.80	-	
3-5	화장실2	163	163	-	25.92	25.92	-	25.92	25.92	-	
3-6	화장실3	173	173	-	25.92	25.92	-	25.92	25.92	-	
3-7	휴게음식점1	-	633	증 633	-	280.00	증 280.00	-	280.00	증 280.00	신 설
3-8	휴게음식점2	-	155	증 155	-	40.00	증 40.00	-	40.00	증 40.00	신 설
공원관리시설		584	584	-	78.88	78.88	-	78.88	78.88	-	
4-1	관리동1	206	206	-	19.44	19.44	-	19.44	19.44	-	
4-2	관리동2	185	185	-	19.44	19.44	-	19.44	19.44	-	
4-3	계 시 판	193	193	-	40.00	40.00	-	40.00	40.00	-	
기 타 시 설		22,592	21,514	감 1,078	49.41	49.41	-	49.41	49.41	-	
5-1	조경녹지	12,105	11,718	감 387	-	-	-	-	-	-	
5-2	진입광장	731	731	-	49.41	49.41	-	49.41	49.41	-	
5-3	주차장1	1,808	1,808	-	-	-	-	-	-	-	
5-4	주차장2	1,155	1,155	-	-	-	-	-	-	-	
5-5	탐 방 로	6,478	5,787	감 691	-	-	-	-	-	-	
5-6	도 로	315	315	-	-	-	-	-	-	-	

2.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정선읍사무소

3.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정선읍사무소로 서면제출

5.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와 정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3-681호

2013년도(FY2012) 정선군 지방재정공시(수시) 공고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동법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에 의거 『2013년도 정선군 지방재정공시(수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9. 30

정 선 군 수

2013년도 지방재정 수시공시

(FY2012)



정선군
JEONGSEON COUNTY

2013년도(FY2012)지방재정 수시 공시(안)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추가 공시 -

① 총괄

정선군 행사·축제 현황

연 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③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 대회	2012. 09. 21 ~ 09. 23	생활체육대회	819,842	0	819,842
2	③	제30회 군민체육대회	2012. 06. 01.	생활체육대회	108,829	0	108,829
3	③	강원학생학년별 육상경기대회	2012. 09. 14. ~ 09. 18.	엘리트체육대회	76,249	0	76,249
4	③	제5회 도넉배 생활체육 전국오픈탁구대회	2012. 04. 13. ~ 04. 15.	생활체육대회	50,024	0	50,024
5	④	2012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제37회 정선아리랑제	2012. 10 . 1 ~ 10. 4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발전	780,000	50,000	730,000

※ 행사·축제 유형

유 형	내 용
① 사회적 약자배려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족, 구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행사·축제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특산물 전시·홍보·판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축제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 화합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 대회, 놀이행사, 경연대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전통문화 계승·발전,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행사·축제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행사(회의·전시·관광·체육 등)
⑥ 기타	①~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행사·축제

② 세 부 원가회계정보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확대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09. 23 ~ 09. 25(3일간) / 2012년 / 1회
- 사업내용 : 21개 종목(정선군 18종목, 타시·군 3종목)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정선군 / 정선군생활체육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885,500(국비0 , 시도비0, 시군구비778,500,자부담80,000)	0
집 행 액	819,842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㉑					사업수익(수익) ㉒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㉓=㉑-㉒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819,842	0	819,842	계		0	819,842
인건비		7,860		7,860	보조금	국비	0	
운 영 비	행사직접비	414,083		414,083		서비스요금	시도비	
	대외홍보비	186,842		186,842	사용료수 익		0	
	시설장비비	144,340		144,340	기 타 수 익		0	
	참가자보상비	23,752		23,752				
감가상각비								
기 타		42,965		42,965	** 수탁기관 자체수입 (정선군생활체육회)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1,050백만원(7,000명×150,000원) ○ 고용유발효과 : 300명(임시 일용인부) ○ 유료입장객 수 : 0명 ○ 입장수익 : 0백만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993백만원(6,620명×150,000원) ○ 고용유발효과 : 300명(임시 일용인부) ○ 유료입장객 수 : 백만원 ○ 입장수익 : 명

제30회 군민체육대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군민체육대회를 통한 군민 화합과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확대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06. 01(1일간) / 2012년 / 매년개최
- 사업내용 : 7종목(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피구, 계주) 체육대회 진행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정선군 / 정선군체육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110,000(국비0 , 시도비0, 시군구비 110,000, 자부담80,000)	110,000
집 행 액	108,829	108,977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㉑				사업수익(수익) ㉒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㉓=㉑-㉒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108,829	0	108,829	계	0	108,829		
인건비		4,600		4,60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84,763		84,763		서비스요금		시도비	0
	대외홍보비	3,340		3,340				사용료수익	0
	시설장비비	14,431		14,431	기 타 수 익			0	
	참가자보상비	1,695		1,695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 (정선군체육회)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100백만원(2,000명×50,000원) ○ 고용유발효과 : 80명(임시 일용인부) ○ 유료입장객 수 : 0명 ○ 입장수익 : 0백만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100백만원(2,000명×50,000원) ○ 고용유발효과 : 80명(임시 일용인부) ○ 유료입장객 수 : 백만원 ○ 입장수익 : 명

2012 강원학생학년별 육상경기대회 및 강원역전마라톤대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강원학생학년별 육상경기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09. 14~18(5일간) / 2012년 / 1회
- 사업내용 : 종목별 육상경기대회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정선군 / 정선군생활체육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77,000(국비0 , 시도비0, 시군구비 77,000, 자부담80,000)	0
집 행 액	76,249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76,249	0	76,249	계	0	76,249
인건비	2,060		2,060	보조금	국비	0
운 영 비	행사직접비	63,568	63,568		시도비	0
	대외홍보비	2,250	2,250		사용료수익	0
	시설장비비	830	830		기 타 수 익	0
	참가자보상비			서비스요금		
감가상각비				** 수탁기관 자체수입 (정선군생활체육회)		
기 타	7,541		7,541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175백만원(700명×50,000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175백만원(700명×50,000원)
○ 고용유발효과 : 250명(임시 일용인부)	○ 고용유발효과 : 250명(임시 일용인부)
○ 유료입장객 수 : 0명	○ 유료입장객 수 : 백만원
○ 입장수익 : 0백만원	○ 입장수익 : 명

제5회 도낙배 생활체육 전국오픈탁구대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5회 도낙배 생활체육 전국오픈탁구대회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04. 13~15(3일간) / 2012년 / 1회
- 사업내용 : 개인전, 단체전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정선군 / 정선군생활체육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50,024(국비0, 시도비0, 시군구비 50,000, 자부담 24)	0
집 행 액	50,024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㉑				사업수익(수익) ㉒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㉓=㉑-㉒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50,024	0	50,024	계	0	50,024
인건비	10,547		10,547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직접비	31,317	31,317		시도비	0
	대외홍보비	8,160	8,160		사용료수익	0
	시설장비비			서비스요금	기 타	0
	참가자보상비				수 익	
감가상각비				** 수탁기관 자체수입 (정선군생활체육회)		
기 타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195백만원(1,300명×150,000원) ○ 고용유발효과 : 300명(임시 일용인부) ○ 유료입장객 수 : 0명 ○ 입장수익 : 0백만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165백만원(1,100명×50,000원) ○ 고용유발효과 : 250명(임시 일용인부) ○ 유료입장객 수 : 백만원 ○ 입장수익 : 명

2012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제37회 정선아리랑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리랑제의 전승과 발전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10.01~10.04(4일간) / 1976년 / 37회
- 사업내용 : 세계 아리랑 및 국내 아리랑을 포함한 전통민요공연 및 정선아리랑 공개발표회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강원도 정선군구 /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780,000 (국비0, 도비50,000, 군비730,000)	780,000
집 행 액	780,000	780,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23%*	수탁기관 77%*					
계		780,000	180,000	600,000	계		50,000	730,000	
인건비		17,000		17,000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직접비	508,000	180,000	328,000		서비스 요금	시도비		50,000
	대외홍보비	93,000		93,000			사용료 수익		
	시설장비비	116,000		116,000					기 타 수 익
	참가자보상비	46,000		46,00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 입(00조직위)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9,325백만원 ○ 고용유발효과 : 270명 ○ 유료입장객 수 : 0명 ○ 입장수익 : 백만원 (근거) 외부용역 :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권순석	○ 지역경제파급효과 : 12,929백만원 ○ 고용유발효과 : 277명 ○ 유료입장객 수 : 0명 ○ 입장수익 : 백만원 (근거) 외부용역 :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권순석